



DEPARTMENT OF THE ARMY
HEADQUARTERS, 2D INFANTRY DIVISION
ROK-US COMBINED DIVISION
BLDG 6500, UNIT #15041
APO AP 96271-5041

EAID-CG

28 January 2020

수신: 하기 배부처 참조

제목: 지휘 지침서 #7: 건강 증진, 위기 경감, 자살 예방

1.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건강 증진 관련 지침을 대체함. 이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
2. 참조.
 - a. 육군 훈령 2018-23, 필수 및 중요 육군 프로그램 효과도 개선 방안, 2018년 11월 8일.
 - b. 육군 규정 15-6, 행정 조사 및 간부 위원회 절차
 - c. 육군 규정 350-53, 군인 및 가족 종합 건강 개선도, 2014년 6월 19일
 - d. 육군 규정 600-63, 육군 건강 증진, 2015년 4월 14일
 - e. 육군 규정 638-34, 육군 치명 사고 피해 가족 브리핑 프로그램, 2015년 2월 19일
 - f. 육군성 팜플릿 600-24, 건강증진, 위기 경감, 자살 예방, 2015년 4월 14일
 - g. 미 8 군 지휘 지침서 #11, 육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2019년 6월 6일
3. 적용 범위. 미 2 사단 행정 통제를 받는 모든 소속, 예속, 예하 구성원들을 포함
4. 목적. 본 지침서는 군인, 가족, 그리고 군무원들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지도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설립하기 위함에 있음.
5. 배경. 육군의 준비태세는 전장에서 싸워 이기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역량임.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향하고, 위험을 추구하는 행동을 자제하며,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준비태세 유지와 견줄만한 중요한 요소임. 미 육군의 자살과 위험 행동을 완화하는 전략적 대응은 부대의 단결성 함양에 기여함.

6. 방침.

a. 미 2 사단 소속 전 지휘관, 지도자, 감독관, 장병, 그리고 군무원은 건전한 행동과 견고한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준비태세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 이는 각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부대원 관리와 관심을 통해 이들의 공적 및 사적인 복지를 도모하는데 기여함.

b. 모든 장병은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군인 정신건강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없는 환경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 모든 장병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경로를 본인과 타인을 위해 사전에 익힐 의무가 있음.

c. 미 2 사단 소속 전 지휘관, 지도자, 감독관, 장병, 그리고 군무원은 건강 증진 그리고 위기 경감에 관련해 제공된 다양하고 방대한 서비스를 정통할 의무가 있음. 첨시된 부록을 통해 아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i. 미 2 사단/연합사단 자살 예방 프로그램 (부록 A): 지도자는 모든 소속 장병과 군무원이 지속적이고 충분한 자살예방 및 인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지휘관은 해당 장병의 여건에 따라 군 정신과 상담처로 평가 문의를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정책을 사전에 숙지해야 함.

ii. 위험 노출된 장병 추적 (부록 B): 지도자는 제공된 다양한 정보들 중 특히 장병지도자위험감소도구(SLRRT)를 활용하여 장병에 대한 전문적 그리고 사적인 지식을 함양해야 함. 위험 노출 수준이 상승된 것으로 판단된 장병의 경우,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계층화하여,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끝으로 해당 장병의 상태에 대해 지휘체계로 보고 해야함.

iii. 지도자는 군인 및 가족 종합 건강 개선도(CSF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군인과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과 현지 정신상담소 방문을 장려함으로서 최선의 정신건강증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AID-CG

제 목: 지휘 지침서 #7: 건강 증진, 위기 경감, 자살 예방

d. 발의. 본 지침서는 미 2 사단/연합사단 의무실에서 발의 되었음. 담당관 연락처는 DSN 756-7377 임.

첨부

부록 A

부록 B

부록 C



Steven W. Gilland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배부처:

A

부록 A

미 2 사단/연합사단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반함.

1. 주요예하사령부(MSC)는 여단 보건 증진 팀 (BHPT)를 설립하고 매월 및 분기별 모임을 주관함으로서 장병, 군무원,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파이트 투나잇' 준비태세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분석한다. BHPT 은 팀원들과 서로 정보, 트렌드 분석, 모범 경영, 교훈 도출, 그리고 교육 개발 공유를 통하여 건강 증진, 위기 경감, 그리고 자살예방 활동 발전에 협력한다. 예하부대는 소속 지휘관의 준비 그리고 견고성 위원회 (CR2C)에 참여하고 관련 자살예방 자료를 제공한다.
2. 지도자는 군인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증진, 위기경감, 그리고 자살예방에 관련된 보건사항을 강조하고 전념한다. 지휘관과 선임감독관은 항상 장병, 군무원,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자살예방 그리고 개입 프로그램이 소속 조직 내에서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3. 각 제대별 지휘관은 소속 장병과 군무원을 위한 자살 예방 및 인식 교육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묻고, 관여, 에스코트 함으로서 자살 예방 및 개입을 하는 "ACE-SI"는 미 8 군 규범으로 선정된 개인 자살예방 교육임. ACE-SI 교육은 4 가지 과목이 있음:
 - a. 모든 중대는 최소 1 명의 ACE-SI 교육관을 유지함
 - b. 모든 장병 및 군무원은 매년 ACE-SI 4 가지 주요 과목 대면 교육에 임할 것.
지휘관이 재량껏 ACE-SI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간, 장소, 수단을 결정할 것.
 - c. 육군규정 600-63 의거 중대급 부대에 속한 초급 간부, 선임간부, 선임참모, 지휘관, 그리고 군무원은 4 시간 추가 ACE-SI 교육 수료가 필수임. 이는 자살 위기 상황에서 개입 능력을 향상하는 일회성 교육임. 지휘관은 재량껏 ACE-SI 보충 교육을 ASIST 훈련으로 대체가능함.
4. 주요예하사령부는 자살예방팀(SRT)를 적극적으로 유지할 것. SRT는 자살 혹은 자살시도 48 시간 내에 소집됨으로서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방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 SRT는 필요시 자살 혹은 자살시도에 고통받는 가족들의 즉각적인 복지와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다.

5. SRT는 사건 검토를 실시하고 DA Form 7747 및 지휘관의 자살의혹 사건보고서를 미 2 사단/연합사단 인사처에 사건 발생 근무일 5 일 이내로 제출한다. 보고서는 당사자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인 식별 정보, 사망 세부 정보, 과거 자살 시도 기록, 성격 및 생활 스타일, 가족 및 관계 기록, 법적 문제 연루, 직업 기능, 재정 문제, 음주 및 마약 사용 기록.
6. 지휘관은 자살 시도 혹은 자살 위험 행위를 보이는 장병을 즉각 정신건강평가 대상으로 치료를 권장한다. 해당 장병은 진료 장소까지 호위 받아야 함. 장병의 지휘계통 관계자는 해당 장병이 가용한 모든 진료를 받도록 보장하고, 차후 경과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협조하여 필요한 특별조치와 관리에 대해 지침을 받도록 한다. 중대 지휘관은 eProfile 계정을 <https://medpros.mods.army.mil.eprofile> 을 통해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서 해당 장병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프로필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7. 지휘관은 입원한 환자 장병들의 일일 추적 보고를 해당 대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협조 받음으로서 입원시기부터 퇴원일까지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휘관은 입원시간 기준 48 시간 내에 입원한 장병의 직속상관의 병문안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과 도움이 환자 또는 환자가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지휘관은 자살 의심 사고들이 육군규정 15-6, 600-8-4, 그리고 600-63 에 의거 조사될 수 있도록 한다.
9. 대령급 이상 혹은 대령 진급 예정 지휘관은 사망한 장병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사망 조사 경과 및 현황 보고를 반드시 육군 규정 638-34 에 의거 제공해야 함.

부록 B

지도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인 부하를 식별하고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항상 자기 부하들에 향한 공적 및 사적인 적극적 관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1. 장병지도자위기경감도구 (SLRRT) 는 장병을 신체적, 감정적/정신적, 작업적, 사회적/관계적, 그리고 법적/군기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의 목록임. 장병의 답변을 토대로 지도자는 부하에 대한 더욱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동원함으로서 필요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는 지도자와 부하 간의 대화를 장려함으로서 위험에 놓인 장병을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임. SLRRT는 개발 상담 과정에서 지침서로 활용 가능하나 특정한 장병의 위기 행위를 예측하거나 수준을 판단하는데 동일 및 범용 적용되는 유일 방안으로 채택되서는 안됨.

2. 분대 그리고 부서 지도자, 부소대장, 소대장, 상사, 선임참모, 중대장, 군무원 기타 중대 소속의 모든 일선의 감독관들은 미 2 사단 전출 후 30 일 이내로 예하 부하들과 함께 SLRRT를 완료하고 이후는 분기별로 수료한다.

3. 지도자는 SLRRT 와 개인 관찰, 신뢰할만한 보고 자료, 과거 상담 자료 정보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장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용이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직속상관은 부하의 위기 상태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SLRRT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참조할 것):

- a. 낮은 위기 수준: 특별한 문제가 식별되지 않거나 관련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 및 대응이 갖추어졌을 경우. 잠재적 위험이 크지 않음.
- b. 중간 위기 수준: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다면 장병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이나 우려가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재정 문제, 가족 및 연애사, 음주, 그 외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병사는 심각한 위험행동패턴을 보임).
- c. 높은 위기 수준: 해당 장병의 행동 및 우려 행위로 인해 본인 및 다른 장병들에게 피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팀원들의 안전을 손상할 심각한 행실 문제,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위협 행위, 등)

4. 직속상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만한 위험 행위를 보이는 장병에 대해 매주마다 각각 지휘계통 지휘관들에게 보고할 것.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월별 및 최소 분기별로 중간 및 높은 위기 수준을 보이는 장병들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 대대장은 위기 수준에 놓인 장병들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지원을 위해 각 장병들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여러 유형의 가독성 높은 차트와 그래픽을 활용할 것.

부록 C

군인 및 가족 종합 건강 개선도 (CSF2)는 군인, 가족 구성원 그리고 군무원들의 정신적 견고성 향상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임.

1. 사단에서 승인된, 지정된 정신건강 교관(MRT)은 대대 및 여단급부대에, 견고성훈련 부교관 (RTA)은 중대별로 각각 최소 1 명 이상 분기별 여단급 관련 훈련을 위해 유지되어야 함.
2. 모든 장병은 2 시간 이상의 CSF2 승인 정신건강 훈련을 분기별로 받아야 함.
3. 모든 장병은 연례적 GAT 를 마치고 정신건강, 체력, 그리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받아야 함.
4.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장병들을 식별한 지도자는 미 2 사단 Warrior 정신건강 워크샵에 그들을 참석시키는 것을 권장함. 적어도 분기별로 Area 1 그리고 Area 3 에서 시행되는 워크샵임. 여단 정신건강 보건 담당관을 통해 참석 신청 가능함.
5. 모든 미 2 사단/연합사단 소속 지도자는 개개인의 정신견고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부 자원활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이는 Army Wellness Center 혹은 Ready and Resilient Performance Center 를 포함한다.
6. 최적화된 보건 증진을 위해, 지도자는 부하들이 어떻게 가용한 내부 자원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인지하고 교육하여야 함. 이는 MWR, USO, BOSS, 여행사, SHARP, EO, ACS, Red Cross, 육군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재무 건전성 준비 프로그램, 비상재무지원 프로그램, 가족 화목 도모 증진 프로그램, 군인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7. 지휘관은 새로 전입 온 부하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환영서신을 보낸다. 환영 서신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지휘계통 상의 상관의 연락처와 사단비상작전센터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미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연락시 필요한 지역번호 활용 또한 명시되어야 함.